

KAIST - 부경대학교
상호협력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KAIST와 부경대학교(이하 “양교”라 한다)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양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인력 교류 등 교육 분야
2.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 분야
3. 시설물 등 인프라 분야
4.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사업 분야

제3조(교육 분야 협력) ① 양교는 교원·연구인력·학생의 상호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

② 양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상호 학점 인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연구 분야 협력) ① 양교는 연구 교류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인프라 분야 협력) ① 양교는 상호 도서관 출입, 자료 열람 및 시설 이용 등을 협조한다.

② 양교는 실험실습을 위한 연구기기·시설물 공동 활용에 협조한다.

제6조(사업 분야 협력) ① 양교는 공유·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책 사업 진행 등에 협력한다.

제7조(홍보) 양교는 협력 사항 등에 대한 언론매체 등을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경우 상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도자료에는 양교가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① 양교는 본 협약서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또는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전 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서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 제9조(협약의 이행 및 변경)** ① 양교는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본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약서의 내용은 양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양교의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니며,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별도 서면 통보가 없는 한 2년씩 연장된다.

제11조(보관) 양교는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7월 25일



K A I S T
총장 이 광 형



부 경 대 학 교
총장 장 영 수

이 광 형

장 영 수